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0일 04시 21분



목차

목차	2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추진개요	3
보증서 신청	3
확인서 발급신청	3
추진 절차	4
유의사항	4
문의	4

개발공시지가열람	개발주택가격열람	도로명주소안내	부동산중개업안내
조상땅 찾기 안내	비법인단체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추진개요

- 시행기간 : 종료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범위
 -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적용대상
 -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건물제외)
 - ※ 토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불법건축물 제외)

보증서 신청

-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의 보증인 4명과 변호사·법무사 중 1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 > ※ 보증인 안내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 문의

확인서 발급신청

- 접수 장소
 - > 토지 :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 건물 :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
 - 첨부 서류
 - > 5명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변호사·법무사 1인 포함)
- (<http://www.yeosu.go.kr>)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추진 절차



유의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증서 서식	hwp다운로드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hwp다운로드
이의신청서	hwp다운로드
이의신청 취하서 서식	hwp다운로드

문의

· 전화번호 : 061-659-5641 / 팩스 : 061-659-5810

Yeosu Web Contents

